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88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3명, 경사 23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의 일반직 41명(8급 7명, 9급 34명)을 경찰병원으로 이체하고, 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및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며, 치안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정 50명을 총경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 군위경찰서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 군위경찰서로 변경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02명(경위 1명, 경사 160명, 경장 291명, 순경 10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경찰청 하부조직의 명칭이 소관업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의 명칭을 국제공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경찰청 치안상황대응과 및 서울경찰청 치안상황대응과의 명칭을 치안정보상황과로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기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제공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을 “국제공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교육 및 관리 업무

5.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8조제1항 중 “자치경찰과·여성안전기획과·청소년보호과·교통기획과 및 교통안전과”를 “교통기획과·교통안전과·자치경찰과·여성안전기획과 및 청소년보호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

4.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5. 운전면허 관련 기획·지도

6. 운전면허시험의 지도·감독

7.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9. 교통규제 관련 법령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지침·시스템 관리·개선

10.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감독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8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7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11.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 및 감독

13. 자율주행 분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 등 신기술 관련 기획 및 연구 개발

제11조제3항 중 “치안상황대응과·치안정보분석”을 “치안정보상황과·치안정보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안상황대응과장”을 “치안정보상황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제1호나목 중 “폭력”을 “폭력 및 실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중 “아동학대, 실종”을 “아동학대”로 한다.

제19조제5항제3호 중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을 “경호 안전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간첩·테러·경제안보·첨단안보”를 “간첩·테러·경제안보·안보사이버”로, “분석·지원”을 “수집·분석·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안보위해정보 수집·분석·지원

9. 안보범죄 첩보 및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대내외 협력

제19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간첩·테러·경제안보·첨단안보”를 “간첩·테러·경제안보·안보사이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테러·방첩업무의 지도·조정, 관련 정보 수집·관리

4.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5. 안보수사, 대테러·방첩업무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 교류·협력

6. 보안관찰 업무에 관한 사항

제39조제1항 중 “치안상황대응과”를 “치안정보상황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동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안상황대응과장”을 “치안정보상황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동

제40조제4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실종 사건

제43조제1항 중 “여성안전과·청소년보호과·교통관리과 및 교통안전과”를 “교통관리과·교통안전과·여성안전과 및 청소년보호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6.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

7.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3조제5항(중전의 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3항 본문 중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

라남도·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북도”를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를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남부·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북도”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북도”를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4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실종 사건

별표 1 중 “전라북도경찰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란 위치란의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란 관할구역란의 “전라북도 일원”을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서울강서경찰서의 위치란 중 “73”을 “308”로 한다.

별표 2의 서울수서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중 “자곡동, 포이동”을 “자곡동”으로 한다.

별표 2의 부산강서경찰서의 위치란 중 “명지독길 645”를 “명지국제1로 305”로 한다.

별표 2의 대구달성경찰서의 위치란 중 “현평면”을 “현풍읍”으로 한다.

별표 2의 대구강북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중 “읍내동”을 “읍내동”으로 하고, 대구강북경찰서란 다음에 대구군위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구군위 경찰서	군 위 군 위 읍 중앙길 74	군위군
-------------	------------------------	-----

별표 2의 인천남동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중 “구원1·2·3·4동”을 “구월1·2·3·4동”으로 한다.

별표 2의 인천논현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중 “장수서창동”을 “장수서창동, 서창2동”으로 한다.

별표 2의 남양주남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중 “양정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을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으로 한다.

별표 2의 구리경찰서의 위치란 중 “아차산로359”를 “아차산로 359”로 한다.

별표 2의 진천경찰서의 위치란 중 “중앙동로 68”을 “덕금로 165”로 한다.

별표 2의 당진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중 “당진군”을 “당진시”로 한다.

별표 2의 태안경찰서의 위치란 중 “태안군 동백로 112”를 “태안군 태안

읍 동백로 112”로 한다.

별표 2 중 “전라북도경찰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하고, 전북 특별자치도경찰청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 전주시”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한다.

별표 2의 목포경찰서의 위치란 중 “용당로 300”을 “동명로 124”로 한다.

별표 2의 경상북도경찰청의 군위경찰서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창원중부경찰서의 위치란 중 “의창구”를 “성산구”로 하고, 창원중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중 “용동”을 “용동, 퇴촌동”으로 한다.

별표 2의 창원서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창원시 의창구(사림동, 용동, 퇴촌동은 제외한다)

별표 2의 마산중부경찰서의 관할구역란 중 “마산합포구 일부”를 “마산합포구”로 한다.

별표 3 중 “전라북도경찰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서울관악·서울강서·서울구로경찰서”를 “서울관악·서울구로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 인천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인천미추홀·인천서부경찰서”를 “인천미추홀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울산광역시경찰청의 울산남부경찰서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경기도북부경찰청의 의정부경찰서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강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
-------	---------	-----------------

경 찰 청		
인 천 광 역 시 경 찰 청	인천서부경찰서	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 ·수사2과·형사1과·형사2과·경
울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울산남부경찰서	비교통과·치안정보안보과

별표 3의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서울서대문·서울성북경찰서”를 “서울서대문·서울해화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대구광역시경찰청의 대구수성경찰서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경기도남부경찰청의 분당경찰서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서울중앙경찰서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 구 광 역 시 경 찰 청	대구수성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경무과·범죄예 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수사1과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분당경찰서	·수사2과·형사과·경비교통과· 치안정보안보과

별표 3의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서울해화·서울성동·서울서부·서울강북·서울금천·서울중앙·서울방배·서울은평경찰서”를 “서울성북·서울성동·서울서부·서울강북·서울금천·서울중앙·서울방배·서울은평·서울도봉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부산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부산동래·부산영도·부산동부·부산서부·부산사상·부산금정·부산사하·부산강서·부산북부·부산기장경찰서”를 “부산중부·부산동래·부산영도·부산서부·부산사상·부산금정·부산사하·부산강서·부산북부·부산기장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대구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대구동부·대구남부·대구북부·대구달서·대구성서·대구달성·대구강북경찰서”를 “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남부·대구북부·대구달서·대구성서·대구달성·대구강북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인천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인천남동·인천논현·인천부평·인천삼산·인천계양경찰서”를 “인천중부·인천남동·인천논현·인천부평·인천삼산·인천계양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안양동안·군포·부천소사·부천오정·안산상록·오산·화성서부·용인서부·광주·하남·의왕·이천·안성경찰서”를 “안양동안·안양만안·군포·부천소사·부천오정·안산상록·오산·화성서부·용인서부·광주·하남·의왕·이천·안성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제주동부·서귀포경찰서”를 “제주동부·제주서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제주동부·제주서부경찰서란 아래에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서울도봉경찰서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부산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부산중부·부산연제경찰서”를 “부산동부·부산연제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대구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대구중부·대구서부경찰서”를 “대구중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인천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인천중부·인천연수경

찰서”를 “인천연수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수원서부·안양만안·성남수정·성남중원·광명·화성동탄경찰서”를 “수원서부·성남수정·성남중원·광명·화성동탄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경상남도경찰청의 진주·양산경찰서란 아래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명칭란 중 “제주서부경찰서”를 “서귀포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인천광역시경찰청의 인천강화경찰서란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 구 광 역 시 경 찰 청	대구군위경찰서
--------------------	---------

별표 3의 경상북도경찰청의 경찰서 명칭란 중 “의성·청도·영덕·울진·봉화·예천·성주·청송·영양·군위·고령경찰서”를 “의성·청도·영덕·울진·봉화·예천·성주·청송·영양·고령경찰서”로 한다.

별표 4에 대구광역시경찰청의 3급지란에 대구군위경찰서를 신설한다.

별표 4의 시·도경찰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의 경상북도경찰청의 3급지란 중 “의성·청도·영덕·울진·봉화·예천·성주·청송·영양·군위·고령·울릉경찰서”를 “의성·청도·영덕·울진·봉화·예천·성주·청송·영양·고령·울릉경찰서”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827”을 “1,87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17”을 “1,205”로 하며, 경정 “153”을 “154”로 하고, 경감 “385”를 “386”으로 하며, 경

위 “308”을 “371”로 하고, 경사 “152”를 “175”로 하며, 일반직 계 “706”을 “665”로 하고, 행정서기 “206”을 “199”로 하며, 행정서기보 “58”을 “25”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6”을 “8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935”을 “1,98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17”을 “1,205”로 하며, 경정 “153”을 “154”로 하고, 경감 “385”를 “386”으로 하며, 경위 “308”을 “371”로 하고, 경사 “152”를 “175”로 하며, 일반직 계 “814”를 “773”으로 하고, 행정서기 “234”를 “227”로 하며, 행정서기보 “81”을 “4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6”을 “8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34,309”를 “134,3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925”를 “129,942”로 하며, 경무관 “74”를 “77”으로 하고, 총경 “581”을 “628”로 하며, 경정 “2,925”를 “2,874”로 하고, 경감 “10,518”을 “10,529”로 하며, 경위 “17,097”을 “17,060”으로 하고, 경사 “28,527”을 “28,571”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35,120”을 “135,13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925”를 “129,942”로 하며, 경무관 “74”를 “77”으로 하고, 총경 “581”을 “628”로 하며, 경정 “2,925”를 “2,874”로 하고, 경감 “10,518”을 “10,529”로 하며, 경위 “17,097”을 “17,060”으로 하고, 경사 “28,527”을 “28,571”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607”을 “648”로 하고, 일반직 계 “603”을 “64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3”을 “634”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81조 관련)

1. 경찰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4명 (총경 1명, 경정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생활안전교통국 자치경찰과	3명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3) 경무인사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명 (4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4) 수사기획조정관	1명 (치안감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5)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8명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3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6)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2명 (총경 1명, 경위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7) 형사국	1명 (치안감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8) 수사인권담당관	6명 (4급 또는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9)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과	1명 (총경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0) 미래치안정책국	1명 (치안감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 경찰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1명 (치안감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2) 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	12명 (경무관 1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3) 서울특별시경찰청 광역수사단	1명 (경무관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4)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1명 (경무관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5)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1명 (경무관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6)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충남·전남·경북·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2명 (총경 12명)	2026년 9월 30일까지
7) 74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74명 (경정 74명)	2026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시·도경찰청)	90명 (경사 35명, 경장 45명, 순경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16명 (경장 16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00명 (경위 3명, 경사 49명, 경장 44명, 순경 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4)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163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4명, 경사 47명, 경장 72명, 순경 38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사건수사 업무(시·도경찰청)	21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정 7명, 경감 10명, 경위 40명, 경사 81명, 경장 43명, 순경 34명)	
6) 기록물 업무(시·도경찰청)	76명 (기록연구사 16명, 경사 6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7)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85명 (경감 8명, 경위 30명, 경사 19명, 경장 20명, 순경 8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8)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65명 (경위 36명, 경사 61명, 경장 54명, 순경 1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9)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시·도경찰청)	69명 (경사 19명, 경장 31명, 순경 19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0)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6명 (경사 8명, 경장 12명, 순경 6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1)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시·도경찰청)	41명 (경사 2명, 경장 28명, 순경 1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2)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35명 (경장 12명, 순경 19명, 6급 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3)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40명 (경위 7명, 경사 11명, 경장 7명, 순경 1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4)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90명 (경위 12명, 경사 24명, 경장 39명, 순경 1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5) 디지털증거분석 업무(시·도경찰청)	43명 (경위 7명, 경사 14명, 경장 21명, 순경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6)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38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5급 1명, 6급 19명, 7급 36명, 8급 38명, 9급 44명)	
17)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25명 (경위 34명, 경사 50명, 경장 91명, 순경 5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8) 국유재산 관리업무(시·도경찰청)	45명 (7급 21명, 8급 2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9)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6명 (경위 1명, 경사 2명, 경장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0)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60명 (경위 39명, 경사 11명, 경장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1) 사이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63명 (경감 17명, 경위 16명, 경사 39명, 경장 51명, 순경 4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2) 지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53명 (경사 30명, 경장 2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3) 범죄예방 및 순찰 업무(시·도경찰청)	196명 (경감 114명, 경위 8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24) 강력범죄수사 및 우범지역 순찰 업무(시·도경찰청)	169명 (경정 2명, 경감 167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 밑에 <u>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u> 각 1명을 둔다.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 <u>국제협력담당관 및 국제공조담당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④ <u>국제공조담당관</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교육 및 관리 업무</u>	<삭제>
5. (생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삭제>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u>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교육 및 관리 업무</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설>	5.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8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u>자치경찰과·여성안전기획과·청소년보호과·교통기획과</u> 및 <u>교통안전과</u> 를 둔다.	제8조(생활안전교통국) ① ----- ----- <u>교통기획과·교통안전과·자치경찰과·여성안전기획과</u> 및 <u>청소년보호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교통기획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도로교통에</u>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u>종합기획 및 심사분석</u>
	2. <u>도로교통에</u> 관련되는 법령의 <u>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u>
	3. <u>교통경찰공무원에</u> 대한 <u>교육·지도</u>
	4. <u>도로교통공단에</u> 대한 <u>지도·감독</u>
	5. <u>운전면허</u> 관련 <u>기획·지도</u>
	6. <u>운전면허시험의</u> <u>지도·감독</u>
	7. <u>외국운전면허</u> 및 <u>국제 운전면허</u> 에 관한 사항
	8. <u>교통안전교육</u> 및 <u>특별교통안전교육</u> 에 관한 <u>계획수립 및 지도</u>
	9. <u>교통규제</u> 관련 법령 및 <u>보호구역</u> 관련 법령 <u>제정·개정</u> 및 <u>지침·시스템</u> 관리·개선

③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⑤ (생략) ⑥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 4.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5. 운전면허 관련 기획·지도 6. 운전면허시험의 지도·감독 7.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10.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감독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삭제>		지도 9. 교통규제 관련 법령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지침·시스템 관리·개선 10.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감독 11.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12.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 및 감독 14. 자율주행 분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 등 신기술 관련 기획 및 연구 개발 ⑦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④ ----- -----. 1. ~ 9. (현행과 같음) 10.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11.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 및 감독 13. 자율주행 분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 등 신기술 관련 기획 및 연구 개발
---	--	--	---	--

제11조(치안정보국) ①·② (생략)	제11조(치안정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치안정보국에 <u>치안상황대응과·치안정보분석과</u> 및 치안정보협력과를 둔다.	③ ----- <u>치안정보상황과·치안정보분석</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치안상황대응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u>치안정보상황과</u> 장-----.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7조(형사국) ① ~ ④ (생략)	제17조(형사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가. (생략) 나. <u>폭력</u> 사건	1. ----- 가. (현행과 같음) 나. <u>폭력 및 실종</u> -----
다. ~ 사. (생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1.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소년범죄, <u>아동학대</u> , 실종 사건	나. ----- --- <u>아동학대</u>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⑧·⑨ (생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안보수사국) ① ~ ④ (생략)	제19조(안보수사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u> 업무에 관한 사항	3. <u>경호 안전대책</u>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7. <u>간첩·테러·경제안보·첨단안보</u>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첩보에 대한 <u>분석·지원</u>	7. <u>간첩·테러·경제안보·안보사이버</u> ----- 수집·분석·지원
8. <u>보안 관련 정보 분석·지원</u>	8. <u>안보위해정보 수집·분석·지원</u>
9. <u>안보범죄 첩보와 관련한 대내외 협의</u>	9. <u>안보범죄 첩보 및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대내외 협력</u>
10. <u>외사대테러·방첩업무의 지도·조정, 관련 정보 수집·관리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u>	<삭 제>

11.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삭 제>
12. (생 략)	10. (현행 제12호와 같음)
⑥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⑥ ----- -----.
1. 간첩·테러·경제안보·첩단 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휘·감독	1. 간첩·테러·경제안보·안보 사이버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테러·방첩업무의 지도· 조정, 관련 정보 수집·관리
<신 설>	4.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신 설>	5. 안보수사, 대테러·방첩업무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 교류 ·협력
<신 설>	6. 보안관찰 업무에 관한 사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치안정보부) ① 치안정보 부에 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상 황대응과를 둔다.	제39조(치안정보부) ① ----- ----- 치안정 보상황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③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 는 정보활동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 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 동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치안상황대응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④ 치안정보상황과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 는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 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 동
제40조(수사부) ① ~ ③ (생 략)	제40조(수사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④ ----- -----.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 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 다)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가. ~ 다. (생 략)	1.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실종 사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

안전교통부에 <u>여성안전과 · 청소년보호과 · 교통관리과 및 교통안전과</u>를 둔다. ② (생 략) ⑤ <u>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u> 2. <u>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u> 3. <u>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u> 4. <u>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u> 5. <u>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 행정소송 업무</u> 6. <u>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 · 감독</u> 7. <u>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u> ③ <u>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6. (생 략) 7. <u>그 밖에 부 내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 <u>교통관리과 · 교통안전과 · 여성안전과 및 청소년보호과</u>-----.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	--

④ (생 략) ⑥ (생 략) <신 설> 제50조(하부조직) ① · ② (생 략) ③ <u>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북부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③ <u>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u> 2. <u>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u> 3. <u>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u> 4. <u>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u> 5. <u>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 행정소송 업무</u> 6. <u>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 · 감독</u> 7. <u>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u> 8. <u>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제50조(하부조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북부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u>
---	---

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주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69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제64조(형사과) ----- -----.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 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가. ~ 다. (생략)	1. ----- -----
<신설>	라. 실종 사건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		.	.	
			<u>1,827</u>	<u>1,874</u>	+47
경찰공무원 계			<u>1,117</u>	<u>1,205</u>	+88
	.		.	.	
	.		.	.	
경정			<u>153</u>	<u>154</u>	+1
경감			<u>385</u>	<u>386</u>	+1
경위			<u>308</u>	<u>371</u>	+63
경사			<u>152</u>	<u>175</u>	+23
	.		.	.	
	.		.	.	
일반직 계			<u>706</u>	<u>665</u>	-41
	.		.	.	
	.		.	.	
행정서기			<u>206</u>	<u>199</u>	-7
	.		.	.	
	.		.	.	
행정서기보			<u>58</u>	<u>25</u>	-3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6</u>	<u>85</u>	-1
•	•	•	
•	•	•	

[별표 6]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935</u>	<u>1,982</u>	+47
경찰공무원 계	<u>1,117</u>	<u>1,205</u>	+88
•	•	•	
•	•	•	
경 정	<u>153</u>	<u>154</u>	+1
경 감	<u>385</u>	<u>386</u>	+1
경 위	<u>308</u>	<u>371</u>	+63
경 사	<u>152</u>	<u>175</u>	+23
•	•	•	
•	•	•	
일반직 계	<u>814</u>	<u>773</u>	-41
•	•	•	
•	•	•	
행정서기	<u>234</u>	<u>237</u>	-7
•	•	•	
•	•	•	
행정서기보	<u>81</u>	<u>48</u>	-3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6</u>	<u>85</u>	-1
·	·	·	
·	·	·	

[별표 7]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4,309</u>	<u>134,326</u>	+17
경찰공무원 계	<u>129,925</u>	<u>129,942</u>	+17
·	·	·	
·	·	·	
경무관	<u>74</u>	<u>77</u>	+3
총경	<u>581</u>	<u>628</u>	+47
경정	<u>2,925</u>	<u>2,874</u>	-51
경감	<u>10,518</u>	<u>10,529</u>	+11
경위	<u>17,097</u>	<u>17,060</u>	-37
경사	<u>28,527</u>	<u>28,571</u>	+44
·	·	·	
·	·	·	

[별표 8]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5,120</u>	<u>135,137</u>	+17
경찰공무원 계			<u>129,925</u>	<u>129,942</u>	+17
	•		•	•	
	•		•	•	
경무관			<u>74</u>	<u>77</u>	+3
총경			<u>581</u>	<u>628</u>	+47
경정			<u>2,925</u>	<u>2,874</u>	-51
경감			<u>10,518</u>	<u>10,529</u>	+11
경위			<u>17,097</u>	<u>17,060</u>	-37
경사			<u>28,527</u>	<u>28,571</u>	+44
	•		•	•	
	•		•	•	

[별표 9]

경찰병원 정원표(제7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07</u>	<u>648</u>	+41
	•		•	•	
일반직 계			<u>603</u>	<u>644</u>	+4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3</u>	<u>634</u>	+4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157